

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
조례안
(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81호
- 나. 제출자 : 이인식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2. 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2. 2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중장년 창업을 활성화 하여 중장년 일자리 부족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 및 중장년창업기업 등의 책무(안 제3조 및 안 제4조)
- 다. 중장년 창업 관련 실태조사(안 제6조)
- 다. 중장년 창업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(안 제7조 및 제8조)
- 라.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)

4. 관계법령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중장년 창업을 활성화하여 중장년 일자리 부족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됨.
- 주요내용은
 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제정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고
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
 - 안 제4조에서는 중장년 창업기업과 중장년 창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음
 - 안 제6조에서는 중장년 창업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년 창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
 - 안 제7조에서는 중장년 창업 지원계획의 내용에 대하여
 - 안 제8조에서는 중장년 창업 지원사업에 대하여
 -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
- 전국 타시군구에 조례명이 「중장년 창업 지원」인 조례는 없으며, 우리구는 기업지원, 청년창업 2개의 조례에 창업관련 지원 규정이 있음.

구 분	법 규 명	창업지원 사항
금 천 구	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	창업자, 예비창업자 교육비 지원(제13조)
	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창업 관련 사항 없음
	서울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	청년(39세 이하) 창업지원
	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	창업 관련 사항 없음
타 시 군 구	○○○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(8개 지자체)	중장년 직업능력교육 및 취·창업 지원
	○○○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(13개 지자체)	창업 지원
	○○○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(31개 중 7개 지자체)	7개 지자체 창업 지원

- 중장년 창업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업 지원을 통해 세대 간 불평등 완화에도 도움이 되며,
- 개인적 측면에서도 퇴직 후 자아실현 및 소득 보장 및 경제적 안정 확보,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유지 및 사회참여 확대로 사회, 개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됨
- 향후 집행부에서는 중장년 창업의 장·단점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대한 중장년의 적응 및 학습 등 중장년 창업과제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됨.

- 본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117호, 2022. 12. 27., 타법개정]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창업국가 건설을 위하여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(이하 “신산업·기술 창업”이라 한다)을 활성화 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국제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예비창업자, 창업기업, 예비재창업자, 재창업기업 등(이하 “창업기업등”이라 한다)의 기술성, 사업성, 혁신성, 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,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·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.
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
가. 못·늪지·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

다. 농업자재의 관리

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
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
바. 농가 부업의 장려

사. 공유림 관리

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
자. 가축전염병 예방

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
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
타. 중소기업의 육성

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
하.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